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
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파리협정」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, 산림 보전,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「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'23.8.16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수립·변경의 절차 및 내용을 마련(안 제2조)

-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수립·변경 시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, 종합계획을 변경 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

나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·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(안 제3조)

- 실태조사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계획 수립시 필요한 내용,

문헌·현장조사 등 실태조사회 방법, 전문성을 갖춘 국내·외 연구·공공기관, 협회, 단체 등 활용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
다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규정 마련(안 제4조)

-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가 사업추진시 신고의 방법 및 필요한 서류, 신고수리 기간 등 기준을 마련

라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지원 범위, 기준 마련(안 제5조)

-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, 지원방법, 지원가능한 사업 내용 등 기준을 마련

마. 운영표준 작성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(안 제6조)

- 유엔기후변화협약, 관련 국제규범 등 운영표준 작성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운영표준의 내용 등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

바. 연구개발 위탁방법의 절차, 기술의 이용·보급 촉진에 대한 규정 마련(안 제7조)

-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기간·범위·선정방법 등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
-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시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과 상용화하려는 자에 대해 기술·정보·장비·시설의 사용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

사.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의 위탁에 대한 규정 마련(안 제8조)

-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「탄소흡수원법」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위탁하는 사항을 정하고,
- 수탁기관은 산림청장에게 교육·훈련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를 높이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함

아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에 대한 규정 마련(안 제9조)

-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(목적, 회원자격, 자산 및 회계 및 정관의 변경 등)을 정하고,
- 협회에 대하여 지도·감독상 필요한 때에 보고,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협회 운영의 투명성·공공성을 높이도록 함

자.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 마련(안 제10조, 제11조)

- 산림과학원장에게 운영표준 작성, 사업 및 이행 평가의 권한 위임
- 한국임업진흥원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을 위탁
-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(전문인력 수급현황 조사, 학계·산업계 등과의 협력)를 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
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

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
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
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) ① 산림청장은

「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
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종
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
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변화된 국내외 여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
반영하여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
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
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

호까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

3.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
경우

제3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·절차 등) ①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 목적, 기간, 항목 및 내용,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산림청장은 발간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문헌조사, 현장조사,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연구·공공기관·협회·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.

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의 결과를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사업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수리대상

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는 서면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,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수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요청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, 대면,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신청자는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자료 제출의 방식은 제3항의 자료 요청 방식과 같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요청과 자료 제출 등에 걸린 기간은 법 제9조제2항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5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법 제9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하여 그 사항이 수리된 사업자
2. 법 제10조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국가의 정부 또는 사업 대상국가의 정부가 지정한 기관

②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

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대상국가 산림현황, 사회경제조사 등을 포함하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
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이행·측정·보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사업 참여자 및 사업대상 개발도상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·훈련 사업
3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사업대상국의 국가전략 또는 실행전략 구축 지원

나. 사업대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 구축 지원

다. 국가산림모니터링체계 구축 지원

라. 안전장치 구축 지원

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하려는 사업의 선정기준,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, 지원의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조(운영표준의 내용·절차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표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이행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규정

한 사항

2. 「파리협정」 제6조 및 그에 따라 규정된 사항
3.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합의한 운영체계
4. 외국정부와 공동 활용하기 위한 체계
5. 자발적 탄소시장에 활용되는 다양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운영체계
6. 그 밖에 운영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표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조(연구개발의 위탁방법 등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·연구소·대학 등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및 이행의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1. 위탁 기간 및 범위
2. 위탁받는 기관 선정방법
3. 위탁 신청 절차
4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연구개발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사업 지원

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·정보·장비·시설의 사용 지원

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의 위탁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조(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의 위탁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·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제도에 대한 사항
 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감축 및 제거의 측정·보고·검증에 대한 사항
 3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국제규범 등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사항
 4. 국외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동향에 관한 사항
 5. 국외의 탄소가격, 거래 등 시장 동향에 관한 사항
 6. 법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의 적용
 7.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사업의 안전장치에 대한 사항
 8.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사업 대상국가의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
 9. 그 밖에 교육·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

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·훈련사업계획서를 산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관의 현황 및 교육·훈련과정 운영 조직·인력 구성

2. 재정계획서

3. 교육·훈련운영계획

가. 교육훈련과정, 교과목 편성, 교육내용, 교육생 모집에 관한 사항

나. 강사진 운영,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

다. 교육훈련과정 교육비(강의료, 수강료 등 산출근거 포함)

라. 교육훈련평가 방법

4. 교육훈련시설 현황(시설, 장비, 기자재 등)

5. 수강신청 및 취소, 교육비 납부 및 환불, 교육생 관리 등 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·훈련 위탁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국외산립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) ① 법 제18조제4항의 “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,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

4. 임원 및 회원자격 등 조직에 관한 사항

5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6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7.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권한의 위임)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표준 작성
2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및 이행의 평가

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
2. 법 제16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

3.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

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

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

1.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급분석을 위한 현황 조사
2.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계,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
3.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·연구 및 전문인력의 양성·교류
4.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 정 령 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) ① 산림청장은 「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변화된 국내외 여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.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3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·절차 등) ①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 목적, 기간, 항목 및 내용,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산림청장은 발간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문헌조사, 현장조사,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.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
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연구·공공기관·협회·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.

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의 결과를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사업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수리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는 서면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,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수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요청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, 대면,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신청자는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자료 제출의 방식은 제3항의 자료 요청 방식과 같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요청과 자료 제출 등에 걸린 기간은 법 제9조제2항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5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법 제10조제1항

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법 제9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하여 그 사항이 수리된 사업자
2. 법 제10조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국가의 정부 또는 사업 대상국가의 정부가 지정한 기관

②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대상국가 산림현황, 사회경제조사 등을 포함하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
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이행·측정·보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사업 참여자 및 사업대상 개발도상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·훈련 사업
3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사업대상국의 국가전략 또는 실행전략 구축 지원

나. 사업대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 구축 지원

다. 국가산림모니터링체계 구축 지원

라. 안전장치 구축 지원

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하려는 사업의 선정기준,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, 지원의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조(운영표준의 내용·절차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표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이행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규정한 사항
2. 「파리협정」 제6조 및 그에 따라 규정된 사항
3.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합의한 운영체계
4. 외국정부와 공동 활용하기 위한 체계
5. 자발적 탄소시장에 활용되는 다양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운영체계
6. 그 밖에 운영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표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조(연구개발의 위탁방법 등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·연구소·대학 등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및 이행의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1. 위탁 기간 및 범위
2. 위탁받는 기관 선정방법
3. 위탁 신청 절차
4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연구개발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사업 지원
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·정보·장비·시설의 사용 지원

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의 위탁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조(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의 위탁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·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제도에 대한 사항
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감축 및 제거의 측정·보고·검증에 대한 사항
3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국제규범 등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사항
4. 국외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동향에 관한 사항
5. 국외의 탄소가격, 거래 등 시장 동향에 관한 사항
6. 법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의 적용
7.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사업의 안전장치에 대한 사항
8.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사업 대상국가의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
9. 그 밖에 교육·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·훈련사업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관의 현황 및 교육·훈련과정 운영 조직·인력 구성
2. 재정계획서
3. 교육·훈련운영계획

가. 교육훈련과정, 교과목 편성, 교육내용, 교육생 모집에 관한 사항
나. 강사진 운영,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

다. 교육훈련과정 교육비(강의료, 수강료 등 산출근거 포함)

라. 교육훈련평가 방법

4. 교육훈련시설 현황(시설, 장비, 기자재 등)

5. 수강신청 및 취소, 교육비 납부 및 환불, 교육생 관리 등 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·훈련 위탁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) ① 법 제18조제4항의 “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,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

4. 임원 및 회원자격 등 조직에 관한 사항

5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6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7.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
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9.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권한의 위임)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표준 작성

2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및 이행의 평가
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업무를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
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법 제16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
전문인력 양성

3.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

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
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

1.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급분석을 위한 현황 조사

2.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계, 산업체 및 공공
기관과의 협력

3.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·연구 및 전문인력의 양성·
교류

4.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	
연 락 처	(042) 481 - 4088